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2. 1.(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 4.

나. 제 안 자 : 신은호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 7.

라. 상정일자 : 제268회(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1년2월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창규 의원(공동발의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및 각종 전염병 등의 증가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생 마음건강 증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관리와 이해교육,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학생 정신건강을 「학교보건법」에 포함·개정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0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관심군 학생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마음건강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계사업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시기와 목적은 합당하다 사료됨.

○ 또한,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서는 교육감에게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학교의 장에게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건강'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으로 학생이 낙인 될 수 있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하고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으로 제명한 것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강래 의원) 학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관심군으로 판정된 학생에 대해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리된 학생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질문) (김강래 의원) 자녀가 관심군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필요시 학생과 같이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반 학부모님들에게도 마음건강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질문) (김진규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마음뿐만 아니라 정신,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마음건강이라는 용어는 좀 막연한 부분이 있음.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정신건강은 정신질환 등 의학적 치료 접근이고, 마음건강은 정신건강에 심리상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사용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4.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방안

5. 온라인 활용방안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마음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